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제출된 안은 직제개편의 방침에 따라 '99년 10월 16일 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직제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중요 내용은,

첫째, 기금운용의 심의위원회 구성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을 교체하는 것으로

1. 조례 제6조제2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위원은 기획예산과장과 재무과장과 치수과장으로 하는 것이며
2. 제7조제2항의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하수담당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제개편 이전에 재난관리는 도시관리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속해 있었으나 조직개편으로 건설교통국 산하의 치수과에 재난관리업무가 하수담당이 하도록 하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종전과 같이 부구청장이 되나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바뀌어 지는 것과 위원은 구청장이 지명하는 기획예산과장과 재무과장은 변동이 없으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되어 있던 위원을 치수과장으로 변경하며

둘째, 위원회의 간사는 재난관리담당주사가 하던 것을 하수담당주사가 하도록 변경하고

세 번째, 제7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운용관이 도시관리국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건설교통국으로 업무가 이양되므로 건설교통국장이 맡도록 하는 것이며, 기금출납원을 재난관리담당주사가 하던 것을 치수과의 하수담당주사가 맡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개정안임을 인지하시고 원안의 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5
----------	----

제출년월일 : 1999. 11. 19.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99. 10. 16.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직제를 개정된 직제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된 직제에 적합하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제6조) 구성원과 회계관계공무원(제7조)을 교체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개정 (안)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현행과 같음)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현행과 같음)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현행과 같음)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	(삭 제)
5. 규격봉투대금 기한내 납부	(현행과 같음)
6.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현행과 같음)
7. 기타 행정지시사항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의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12. 24.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11월 1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11월 22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68회(정기회) 제13차 위원회 (1999년 12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추진감)

- 가.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99. 10. 16.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직제를 개정된 직제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치수과장으로 함(안 제6조제2항)
 ○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 기금출납원은 하수담당으로 함(안 제7조제2항)

가. (안 제6조제2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치수과장으로 함.

나. (안 제7조제2항)

-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 기금출납원은 하수담당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나. 관계법령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마로 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3항중 “재난관리담당주사”를 “하수담당”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재난관리담당주사”를 “하수담당”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생 략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무과장,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재난관련단체나 기관의 인사로 한다. ③간사는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치수과장,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재난관련단체나 기관의 인사로 한다. ③간사는 하수담당이 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①생 략 ②기금운용관은 도시관리국장,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①현행과 같음 ②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 기금출납원은 하수담당이 된다.

공해로 위협받는우리영등포구민의피해를줄이기위한결의문(안)

의 안 번 호	94
------------	----

발의년월일 : 1999. 11. 8.

발 의 자 : 유남열의원외5인

1. 주 문

서울특별시의 목동개발계획에 의거 소각장 설치후 우리 영등포구민은 소각장에서 분출되는 분진과 다이옥신 등의 환경오염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바 각계각층에 피해 상황을 널리 알리고자 함.

2. 제안이유

가. 영등포구는 공업발달의 시발도시로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초석을 이룬 뿌리깊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속 열악한 환경속에 있으며,